

【 3 】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1998. 12. 29.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함.

□ 주요골자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강제 규정을 “명할 수 있다”의 임의 규정으로 조정(안 제8조)
-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기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규정 신설 (안 제8조의 2)
- 휴직의 효력에 대하여 구체화 함(안 제8조의 3)
- 경노무의 근무상한 연령 “58세”를 “57세”로 조정(별표)
- 근무상한 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신설(부칙 제2항)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안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휴직기간)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

제8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증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별표중 "58"세를 각각 "57"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 중 제5조 제1항·제2항 및 종전 별표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휴직)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8조(휴직)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 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 야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 직을 명할 수 있다.
1. ~2.(생 략)	1. ~2.(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8조의2(휴직기간)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뒤 까지로 한다.
<u>〈신 설〉</u>	제8조의3(휴직의 흐름) ① 휴직증이 고용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 에 종사하지 못하다. ②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뒤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어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u>〔별 표〕</u>	<u>〔별 표〕</u>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 상한여령표	-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경 노 두
직 명	사 환
근무상한연령	58세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57세

"우리가 월드컵 경제, 우리가 죄 살릴시다."

경기번호	11019
수신자	10-01
송신자	

경 기 도

주 44E-701 / 수원시 권선구 해선로3길 17 전화 (033) 249-4030 (FAX 249-2216)
 자치행정과 과장 학영 군수 앤서 달등 박정호 실무자 활수진

문서번호	자치 12100 - 2097	선결	수정수령	지
시행일자	1998. 9. 26.	접수일자	1998. 9. 26.	결재일자
발급처	같는곳참조	시간		기사로
장소	중부(내부)과상	수번호	12100/2097	제작일
		처리과		기록
		담당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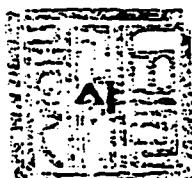
제 노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 통보

1. 협자부 노동 12100-460('98. 9. 17)호와 관련임.

2. 지방공무원법이 개정('98. 9.19)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을 본일과 같이 통보하니 시·군에서도 이 표준안에 의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공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 1부. 2부.

경 기 도 지



전체 자치행정국장 찰증기

같는곳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휴직기간)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

제8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뜻한다.

②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일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일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별표증 “58세”를 각각 “57세”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
직공무원중 제5조제1항·제2항 및 종전 별표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
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양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

□ 개정구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때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강제규정을 “명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으로 조정. (안 제8조).
- 나.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기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규정 신설. (안 제8조의 2).
- 다. 휴직의 효력에 대하여 구체화 함. (안 제8조의 3).
- 라. 경노무의 근무상한 연령 “58세”를 “57”세로 조정. (별표).
- 마.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신설. (부칙 제2항).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상황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기타참고사항

○ 자치12100~2097('98. 9.26)호에 의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증개정조례 표준안 통보공문 사본 : 별첨